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서울금호초 외 1교(장안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정업체로 등록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서울금호초 외 1교(장안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 및 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10:00부터 2026. 7. 16.(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7. 16.(목)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9,996,080원	69,996,080	63,632,800원	6,363,280원
문의	- 공고: 재정지원과(☎ 02-2286-3701) -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02-2286-3751)		

-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의 전자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 ※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지역제한(**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정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그 밖의 사항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